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

I. 머리말

자유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資本主義 경제체제는 私有財產制度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기초로 하여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쟁원리에 입각한 시장경제의 유지와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을 통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민주성이 가장 합리적으로 확보되는 경제체제이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 및 기업 규모가 확대되는 동시에 자본의 집적·집중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시장에 따라서는 獨寡占의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 소수의 대기업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분배상의 형평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독과점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파괴하고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저해하는 폐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獨寡占의 폐해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경제를 창달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獨寡占禁止 또는 독점규제의 입법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독점규제의 입법은 美國과 캐나다를 효시로 하여 선진공업국에서 일찍부터 獨寡占禁止法 또는 公正去來法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美國의 경우 1870~80년대의 불황으

로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한편 트러스트 및 주식회사에 의해 다수의 대기업이 출현하면서 경쟁자 배제를 위한 가격조작 등 각종 不公正去來行爲가 성행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1890년에 「부당한 制限 및 독점으로부터 거래 및 상업을 보호하는 법률(一名 서만법)」을 제정하여 가격 카르텔 등 경제제한적인 거래행위와 독점행위를 금지하게 되었다. 그 후 1914년에違反事件의 조사, 法執行 전담기관설치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조항을 포함하는 「聯邦去來委員會法」과 금지대상 기업행위의 類型 및 독점의 始原的 규제 강화를 주내용으로 「서만법」을 수정보완한 「클레이튼법」이 제정됨으로써 독점금지제도가 정착되게 되었다.¹⁾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物價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공정거래 관련내용이 처음 입법화되었으나, 공정거래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4월 「獨占規制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 시행되면서 부터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公正去來制度의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의 주요내용과 그 운용성과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II.公正去來 제도의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우리나라 경제는 60년초 경제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한

註 : 1) 英國에서는 1948년에 「獨占 및 制限의慣行(調查 및 規制)法」이 성립된 이후 1973년에 「公正去來法」, 1976년에 「制限의去來行爲法」 및 「再販賣價格法」, 1980년에 「競爭法」이 제정되었다.
日本에서는 미군점령 당시의 1947년에 「私的獨占의 금지 및公正去來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西獨의 경우에는 1957년에 「競爭制限禁止法」이 성립되었다.

이래 연평균 8%를 넘는 高率成長을 지속함으로써 25년 여의 짧은 기간 동안에 후진농업국으로부터 세계의 주목을 받는 신흥공업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발전은 선진국 산업의 移植으로 공업화를 추구함으로써 가능하였는데, 자본과 자원이 부족하고 산업기반이 미비된 상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공업화의 추진 그 자체가 獨寡占 생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더 우기 협소한 국내시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위주의 정책운용을 펴게 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가 강조되고 先發기업에 대한 보호체계가 유지됨으로써 獨寡占的 산업체제의 성격이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고도성장의 이면에서는 이와같은 경제의 불균형적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소위 1960년대의 3粉 暴利事件, 코로나 自動車폭리사건 등과 같이 독과점기업의 비행이 커다란 사회문제화될 때마다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입법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업계의 강력한 반대와 당시 팽배하였던 先成長-後分配라는 성장우선주의의 논리에 밀려 번번히 무산되고 말았다.²⁾

이러한 公正去來法의 제정노력은 1차 石油波動으로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개별품목 위주의 가격관리정책에 한계를 느낀 정부가 독과점 폐해의 규제를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1975년말 「物價安定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드디어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법은 독과점의 폐해와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공정거래에 관한 규정을 담은 최초의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소유의 집중을 억제하는 내용이 제외되었고, 카르텔도 경우에 따라 허

용하는 등 자본축적과 산업보호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 하되 독과점의 폐해만을 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이 미흡한 데다가 단기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이 강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더우기 이 법은 만성화된 인플레이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의 확대 등 고도성장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문제점의 노정과 함께 그 실효에 한계를 드러내었다.

1980년대에 들어 경제정책의 목표가 안정위주로 바뀌고 민간의 경쟁과 자율이 강조되면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0년 10월에 개정된 憲法 제120조 3항의 「獨寡占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 조정한다」는 독과점규제 규정을 근거로 정부는 과거의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였다. 전문 60조 및 부칙 8조로 구성된 동 법안은 1980년 12월 23일 임시 입법회의의 의결을 거쳐 동년 12월 31일 확정·공포되었으며 이듬해 4월 1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서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경제적 약자인 受給事業者를 보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4년 12월31일 「下都給去來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1986년말 그동안의 공정거래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수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경제력이 불합리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상호출자 금지, 出資總額 제한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2) 그동안의 공정거래제도 도입시도를 살펴보면,

첫째, 3粉 과동을 계기로 1964년에 추진되었던 「公正去來法 草案」이 최초의 독과점 규제 입법시도였으나閣議에 상정되지 못하였고

두번째, 1966년의 「公正去來法案」이 獨寡占企業의 남용행위, 기업결합 및 不公正去來行爲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1967년 8월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세번째, 1969년의 「獨占規制法案」은 코로나 乘用車會社의 폭리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서 1966년의 「公正去來法案」에 비해 기업결합과 不公正去來行爲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소 완화된 내용이었으나,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1971년의 「公正去來法案」은 國際通貨制度不安 등 세계경제여전의 변화에 따른 물가상승의 가속화에 대처하기 위해 종전 법안들의 내용을 결충하여 입안되었으나 역시 시기상조론에 밀려 좌절되었다.

III. 現行制度의 주요내용

현행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구조와 거래형태의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창달하여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근거법으로는 「獨占規制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下都給去來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下都給法)이 있다.³⁾

공정거래법은 事業者의 市場支配的 地位의 남용과 과도한 經濟力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不公正去來行爲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대금지급거절, 부당감액 등 20개 유형의 불공정한 下都給去來行爲를 금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공정거래제도의 내용을 기둥에 따라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제도와 거래형태의 개선을 위한 제도로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보자 한다.

1. 市場構造의 개선을 위한 제도

시장구조란 시장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數, 기업들의 규모분포, 제품차별화 및 시장참입(entry) 조건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시장구조가 경쟁상태에서 벗어나 小數 대규모기업에 의해 시장참입이 제한되고 제품의 동질성이 적어져 점차 차별화될 때 시장의 독과점화가 진행된다. 이러한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개선하여 경쟁적 시장구조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집중도, 참입장벽, 製品差別化 등 시장구조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既存 독과점을 대한 규제와 새로이 독과점을 꾀

3) 이 두 法律은 “…市場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憲法 제119조 2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규제와 조정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시장지배적 事業者의 지정 및 폐해 규제

공정거래법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매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어떤 제품이나 용역의 대부분을 생산함으로써 동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과 생산량 등을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사업자를 가리키며 현재의 지정기준은 최근 1년간의 국내총공급액이 300억원 이상인 동종 또는 유사한 품목이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1事業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사 이하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단,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인 경우로 하고 있다.

이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경쟁의 압력이 적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격과 생산량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타사업자와의 거래조건도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기 쉬우므로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특별히 규제를 하고 있다. 법상 금지되고 있는 濫用行爲의 유형을 보면 가격의 부당한 결정 유지 또는 변경, 상품 또는 용역의 부당한 출고조절, 타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입 방해, 기타 경쟁의 실질적 제한 및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 등이 있다.

(2) 경쟁제한적인 企業結合의 제한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독과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및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결합이란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없어지고 사업활동의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회사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말하는데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의 유형으로서 他會社의 株式취득, 임원의 겸임, 다른 회사와의 합병, 영업의 양수,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등을 들고 있다.

기업결합의 형태에는 同種의 경쟁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수평결합, 기업이 자신의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결합하

는 수직결합, 그리고 경쟁관계가 없는 다른 업종의 기업 간의 혼합결합이 있다. 법상 규제되고 있는 기업결합행위는 시장지배력을 형성·유지·강화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수직 또는 수평적 기업결합으로서 규제대상은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50억원 이상인 회사(系列會社 및 특수관계인 포함)이며, 주식취득의 경우에는 개인, 비영리법인, 조합 및 단체도 포함된다.

公正去來法은 이상의 규제대상기업이 다른 회사 株式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단독 또는 해당회사의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회사가 합병·영업양수·회사설립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會社 이외의 자가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20% 이상의 회사의 주식을 각각 20%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지배결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합병·영업양수·회사설립은 사전에, 주식취득·임원겸임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국제경쟁력 강화와 산업합리화를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3) 經濟力集中의 억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추진한 결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대화가 촉진됨으로써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제력집중은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이득보다는 불합리한 경제력집중으로 인해 경영능률의 저하, 재무구조의 악화, 중소기업의 위축, 富의 편재 등 폐해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소수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경제력이 불합리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먼저 상호출자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이에 해당되는데 소속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가 4,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을 그 금지대상으로 하여 여기에 속한 회사간의 직접적인 상호출자행위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⁵⁾ 이처럼 상호출자를 규제하는 이유는 상호출자가 자금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출자없이 가공적으로 資本金을 늘리거나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로 기업공개를 회피하고 特定大株主가 多數系列會社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기업집단의 출자유형중 가장 불합리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 相互出資의 규제만으로는 持株의 출자나 계열적 출자, 간접 상호출자등에 의한 기업확장의 효과적인 억제가 곤란하여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동시에 마련하였다. 이는 부채에 의한 출자를 억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기업집중을 억제하고 기업공개를 촉진하여 증권시장의 발전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중소기업분야의 잠식을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내용을 보면 직접 상호출자가 금지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자본에서 계열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 및 國庫補助金을 차감한 순자산액의 40% 범위내에서만 타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⁶⁾ 이러한 직접 상호출자의 금지 및 出資總額 제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4) 상호출자의 유형에는 2개의 기업이 주식의 교환을 통해 상대기업에 출자하는 직접 상호출자(甲=乙), 主力企業이 다수의

기업에 출자하고 이를 기업이 다시 산하기업들에 출자하는 형태의 持株의(방사선) 출자 甲→乙→丙, 다수의 기업간 출자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져 直接相互出資의 효과가 나타나는

단순한 형태의 계열적 출자(甲→乙→丙), 다수의 기업간 출자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져 直接相互出資의 효과가 나타나는 간접 상호(循環)出資 甲→乙→丙, 직접, 지주적 및 간접 상호출자의 혼합형으로 대부분 기업집단의 출자형태가 되는 복합적 출자가 있다.

5)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의 讓受, 담보권의 실행 또는 代物辨濟의 수령, 失權株의 인수 및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새롭게 계열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6)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① 工業發展法 또는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합리화 조치에 따른 출자(4년간에 한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년간 추가연장 가능) ② 擔保權의 실행 또는 代物辨濟受領에 따른 출자(1년간에 한함) ③ 既所有株式의 유상증자 및 利益配當에 따른 출자(1년간에 한함)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당시의 직접 상호출자분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時限 : 1990년 3월말)을 그리고 출자총액이 출자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5년의 유예기간(時限 : 1992년 3월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議決權 제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금융·보험회사가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기본목적이 해당 회사의 지배보다는 受託資產의 收益性 제고에 있다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들 金融·保險會社가 계열회사의 事業을 사실상 지배하는 持株會社化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회사는 자기가 소유한 국내계열회사의 株式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출자변동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大規模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대해 매년 3월말까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당해회사의 주주현황과 재무상황을 經濟企劃長官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주식소유현황 신고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밖에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持株會社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持株會社가 생산면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함이 없이 소액의 자본으로 多數의 계열회사를 지배함으로써 불합리한 경제력의 집중을 초래하고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시장의 실질적인 독과점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회사의 사업지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持株會社를 신규로 설립하거나 既存會社가 持株會社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公正去來法은 타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액이 當該會社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간주하며, 다만 당해회사의

출자규모, 출자목적, 출자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라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인정할 경우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⁷⁾ 지배목적의 판단은 당해회사(계열회사 및 特殊關係人 포함)가 被出資會社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最多出資者이거나 被出資會社의 경영에 직접참여 또는 임원의 임면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의 여부로 결정한다.

2. 去來形態의 개선을 위한 제도

거래형태의 개선을 위한 제도는 주로 시장행동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소망스럽지 않은 시장성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규제대상이 되는 행동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한 下都給去來行爲 및 불공정한 국제계약체결 등이 있다.

(1) 부당한 共同行爲의 제한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계약·협정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 대방을 제한하는 등 서로 그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카르텔이라 불리운다.⁸⁾ 이러한 공동행위의 폐해로는 사업자간의 경쟁을 없애 한계기업까지도 계속 존속시킴으로써 소비자의 희생위에 공동행위 구성원의 이윤을 유지·증가시킨다는 점, 공동행위는 소수의 대기업간에 형성되기 쉬워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不利益을 주고 소득의 불균형상태를 초래한다는 점, 사업자간의 경쟁압력이 없어짐에 따라 기업의 창의력 발휘, 신기술 개발 및 경영합리화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규제대상이 되는 공동행위의 유형을 보면 가격의 공동 결정, 상품판매조건의 공동결정, 생산·출고·운수·판매 제한,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의 제한, 설비의 신·증설 제한, 상품의 종류 및 규격제한, 영업의 공동수행·관리를 위한 회사설립, 다른 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활동 제한 등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 7) 外資導入法에 의한 外國人投資會社의 지분참여를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승인한 경우 또는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설립이 가능하며, 개정 公正去來法 시행당시의 持株會社는 1년간 존속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8) 이는 企業結合과는 달리 共同行爲 참가자들의 독립성이 대등하게 보장되며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협정사항에 대해서만 공동행위 내지 공동정책을 취한 행위를 뜻한다.

는 부당한 共同行爲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합리화, 不況克服, 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및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事業者團體의 경쟁제한행위 금지

公正去來法은 사업자단체의 특정한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사업자단체의 설립·변경·해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업자단체의 활동이 구성사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담합행위를 유발하거나 개별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단체가 카르텔의 연장 또는 그 은폐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금지되어 있는 공동행위를 쉽게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단체란 ××工業會, ××協會, ××組合 등 그 명칭과 형태에 관계없이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하며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으로는 가격결정, 생산·출고조절행위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 사업자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회원이나 조합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不公正去來行爲 또는 再販賣價格 유지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3)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값싸고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이 이윤획득의 기회를 갖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으로부터의 탈락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기업이 가격이나 품질에 의한 경쟁을 회피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他企業과 경쟁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에 역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게 되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지정·고시한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으로서는 부당한 차별취급, 부당한 경쟁자의 배제, 부당한 경쟁자의 고객유인 또는 거래상 강제, 지위의 부당이용, 부당조건부 거래, 허위 또는 과장광고의 6가지가 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정할 때에

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特定事業分野 또는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전자를 일반지정 불공정거래행위, 후자를 특수지정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한다.

一般指定 不公正去來行爲로는 아래와 같은 12개 유형, 즉 부당한 去來拒絕行爲, 거래조건 등의 차별적 취급행위, 집단배척 및 집단적 차별취득행위, 원가 이하로 계속 판매하는 부당한 級價賣입행위, 부당한 고객의 유인행위, 부당표시행위, 부당한 거래강제행위, 대기업이 하청회사의 기업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 자기의 경쟁상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排他條件附 거래행위, 자기의 계열회사로부터 물건을 사도록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拘束條件附 거래행위, 그리고 허위·과장·비방·광고행위 등이 지정되어 있다. 한편 특수지정 불공정거래행위로는 과다한 景品類의 제공, 부당한 劇引特別販賣行爲, 사업자가 下都給事業者에 대하여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불공정한 下都給去來行爲 금지

下都給이란 어떤 기업(原事業者)이 자기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업자(受給事業者)에게 위탁하는 生產分業關係로서 下都給法에서는 原事業者인 대기업과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 사이의 도급계약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 남용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下都給去來 실태를 살펴보면 시장규모와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下都給去來 비중은 점차 증가되어 왔는데, 전체 중소기업체중 下都給거래를 하는 중소제조업체수의 비중은 1976년의 19.7%에서 1981년에는 36.7%로, 1986년에는 42.5%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소제조업체의 출하액중에서 하도급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6년의 70.4%에서 1981년에는 28.8%로, 그리고 1986년에는 29.7%로 늘어났다. 이러한 下都給去來의 비중 증가는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어 하도급거래의 전전한 육성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下都給去來 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原事業

者와受給事業者間에 협조적이고 호혜적인 관계가 정립되거나 유지되고 있지 못하고 거의가原事業者인 대기업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즉原事業者が 제조 또는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受給事業者에게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함으로써 하도급업자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산에 임하게 되며 후에 발주내용에 관한 이견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권익보호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약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그 계약내용에 대금지급방법이나 납품에 대한 검사방법 등 중요사항이 없거나原事業者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下都給代金의 결정에 있어서도原事業者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낮게 결정된 단가 자체도 추후原事業者の 경영악화 또는 경제여건 등의 변화를 이유로 다시 낮추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受給事業者の適正收益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밖에下都給代金지급에 있어서도現金決済보다는 2개월 이상의 장기 외상결제가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金融受惠가 곤란한中小受給事業者の 자금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下都給法은 불공정한下都給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受給事業者の 열세적 지위를 보호하여原事業者와受給事業者간의 평등한 지위를 확보하게 하고 상호보완적 역할을 통하여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下都給法이 적용되는 대상에는製造委託,修理委託 및 건설(건설·電氣工事·電氣通信工事·消防施設工事)위탁이 포함되어,原事業者와受給事業者の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表-1)

	原事業者	受給事業者
製造, 수리위탁	대기업	중소기업
	상시종업원 100인 초과 중소기업	상시종업원 100인 이하 중소기업
건설 위탁	건설업자	중소건설업자

下都給法에서原事業者の 준수사항으로書面 약정서교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下都給代金 지급

지연금지, 부당한對物辨濟금지, 不當減額금지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受給事業者에 대해서는 위탁내용의 성실한 수행,原事業者の違法行為에 대한 동조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하도급분쟁의 자율적인 조정을 위해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등 5개 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5) 기타

이밖에 거래형태 개선을 위한 제도로서再版賣價格유지행위의 규제와 불공정한國際契約締結제한이 있다. 再版賣價格유지행위란 생산자가 유통단계별都·小賣가격을 미리 지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생산회사가 모든 대리점에게 같은 가격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직매점에서 파는 소비자가격을 외판원이 파는 가격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활동에 있어서 기본적 사항인 판매가격의 자유로운 결정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본래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는 가격에 개입함으로써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모든再版賣價格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著作物과再版賣價格유지행위 대상상품으로 지정고시된 상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제도시행초기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한편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의 제한은 외국의 계약상대방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국내사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의 평등한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계약의 종류에는外資導入法에 의한 차관·合作投資·기술도입계약과 저작권도입계약 및輸入代理店契約, 장기수입계약 등이 있는데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再版賣價格유지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된 국제계약의 체결은 금지된다. 그 예로는原資材 또는 部品供給者の 부당한 지정, 販賣價格·販賣地域·販賣條件의 부당한 제한, 수출지역·수출창구의 부당한 제한, 경쟁제품의 취급제한 등을 들 수 있다.

3. 專擔機構 및 事件처리절차

이상과 같은公正去來制度를 운영하는 전담기구로 경제기획원에公正去來委員會와 공정거래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무는公正去來室이 담당하고 있다.公正去來委員會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중요사항과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결정·처분에 앞서 이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3인은 상임, 2인은 비상임으로 되어 있다. 위원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한데 위원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임명하게 되나,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할 수도 있으며, 현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는公正去來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不公正去來行爲의 지정, 再販賣價格 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의 지정 및 국제계약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再販賣價格 유지행위의 범위 및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고발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공정거래실의 주요 업무는公正去來에 관한 정책의 수립,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사전심사 및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제출, 그리고 法律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 등이다. 공정거래실은 실장 1인, 심의관 1인, 審查官 2인과 8개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관은公正去來政策 관련사항을 그리고 심사관은 위반행위의 조사 및 사전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사건처리절차를 보면經濟企劃院長官은 법률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또 누구든지 법률 위반사실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 심사관은 위반사건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

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및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관은 사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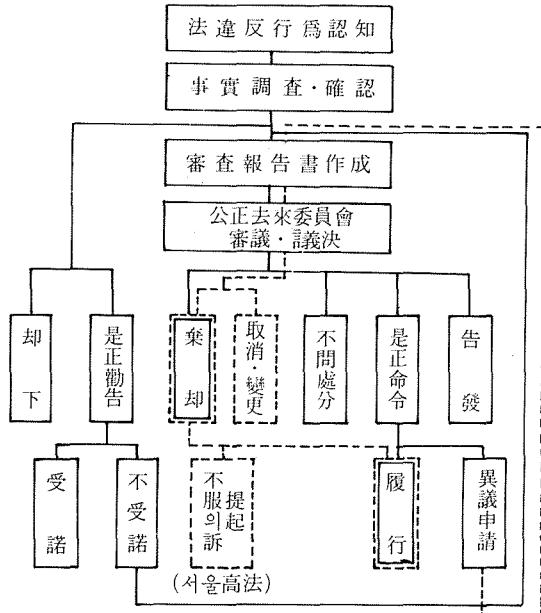
公正去來委員會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상임위원회가 내용을 예비검토한 후 이를 30일 이내에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관은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10일 이내에 심의에 참석한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의결서를 위반행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경제기획원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또는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자체없이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不服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公正去來法 위반에 대한 벌칙을 보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각종 경제력집중 억제 및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법 제55조), 각종 不公正去來行爲,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불공정한 국제계약 체결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56조). 또한 각종 신고,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57조).⁹⁾ 이상의 事件處理節次를 보면 <그림-1>과 같다.

9) 신고, 자료제출 의무 위반 및 허위 신고를 제외한 법률 위반시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림-1〉 事件處理 절차



IV. 運用成果

1981년 4월1일부터 *公正去來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지 7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제도상으로는 1985년 4월1일 *下都給法*을 새로이 제정·시행하고 1987년 4월1일자로 *公正去來法*을 개정하여 경제력집중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조치가 있었다. 그리고 *公正去來制度*의 효율적 운용 및 공정거래관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도시행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부문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정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기존 법령 또는 새로이 제정될 법령이 공정거래법 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협의하는 법령협의가 1987년 말 현재 301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업체 및 사회일반으로 부터의 질의나 상담도 매년 크게 증가하여 1987년 말 현재 4,178건에 이르고 있다.

〈表-2〉 公正去來法 위반사건 시정 및 質疑·相談實績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累計
市場支配的事業者濫用行爲	-	-	2	6	2	1	5	16
企業結合	23	45	22	42	25	22	32	211
事業者間共同行爲	-	-	-	7	10	4	7	28
事業者團體競爭制限行爲	5	9	11	5	8	37	16	91
不公正去來行爲 (下都給) (市場支配的事業者)	37 (1) (10)	37 (-) (8)	149 (4) (14)	130 (85) (24)	278 (140) (31)	417 (153) (31)	381 (141) (25)	1,429 (524) (143)
國際契約	78	169	212	244	234	270	241	1,448
違反事件是正實績合計	143	260	396	434	557	751	682	3,223
法令協議	18	20	39	62	57	54	51	301
質疑·相談	58	33	316	342	394	1,294	1,741	4,178
協議 및 質疑·相談實績合計	76	53	355	404	451	1,348	1,792	4,479

〈資料〉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制度의 주요 운용성과를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조치와 거래형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후 매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 고시하고 지정된 이들 사업자의濫用行爲를 중점 감시해 오

고 있는데, 연도별 시장지배적 상품수 및 대상사업자 지정현황은 〈표-3〉과 같으며, 1987년 말까지 濫用行爲 16건을 시정조치하였다. 한편 경쟁촉진을 통한 생산성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獨寡占 품목의 수입자유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전체 품목의 수입자유화율보다 현저히 낮았던 獨寡占 品目の 자유화율을 점차 상향조정함으로써 금년 4월에는 오히려 전체 自由化率보다 높아지도록 하였다. 또한 80년대초 40%에 이르던 시장지배적 품목의 關稅率를 하향조정하여 다른 품목과의 격차를 크게 축소시켰다(표-4 참조).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초래하는 기업결합은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독과점기업의 출현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는데 1987년말 현재 211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87년 4월1일 상호출자 규제제도를 도입하여 상호 출자규제 및 출자총액 제한제도 적용대상으로 총자산이 4,000억원을 초과하는 32개 기업집단, 514개 계열회사를 지정하고, 계열회사간 직접 상호출자분을 1990년 3월31일까지 그리고 他會社 출자총액이 純資產의 40%를

〈表-3〉 연도별 시장지배적 商品數 및 對象事業者 지정현황

(單位 : 개)

品目數								
價格濫用禁止對象	23	35	38	45	57	61	106	122
同調的引上 규제대상	26	27	33	44	58	67	—	—
合計	42	48	58	71	85	100	106	122
事業者數								
價格濫用 금지대상	23	35	38	45	58	61	240	286
	(20)	(32)	(35)	(38)	(45)	(47)	(161)	(177)
同調的引上 規制대상	71	67	87	117	137	187	—	—
	(50)	(52)	(68)	(98)	(105)	(145)	—	—
合計	102	115	142	179	216	266	240	286
	(71)	(87)	(107)	(136)	(151)	(181)	(161)	(77)

〈資料〉 經濟企劃院

註: 1) ()안은 중복을 제외한 純事業者數.

2) 1986년 이전의 경우 품목수의 합계가 불일치하는 것은 하나의 품목이 동시에 價格濫用 禁止對象과 동조적인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사업자수의 합계가 불일치하는 것은 複占市場의 경우 市場占有率 50%미만의 事業者는 價格濫用이나 同調的인상의 규제대상에서 모두 제외되기 때문임.

3) 1986년 公正去來法 改正時 가격의 同調的引上 規制條項을 삭제하고 價格濫用行爲 금지대상을 모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확대하였음.

〈表-4〉 品目別 수입제한 및 관세율 추이

(單位 : %)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輸入自由化率 ¹⁾						
시장지배적품목	52.0	62.4	78.0	90.6	94.6	95.9
全品目	80.4	84.8	87.7	91.5	93.6	95.4
關稅率						
시장지배적품목	40.9	33.2	32.9	26.5	25.0	22.1
全品目	23.7	21.9	21.3	19.9	19.3	18.1

〈資料〉 經濟企劃院

註: 1)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됨. 1988년은 4월 1일 기준임.

초과하는 량은 1992년 3월31일까지 유상증자, 주식매각, 利益剩餘金留保 등의 방법을 통하여 모두 처분하도록 하였다.¹⁰⁾ 이 제도는 경제력집중 완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주력업종에의 전문화 유도를 위한 것으로公正去來室은 1988년 4월말까지 전년 4월에 최초로 지정되었던 대규모 기업집단별로 주식소유현황을 파악하여 상호출자분 및 出資總額限度 초과분 해소실적이 부진할 경우 연도별 균등해소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방침으로 있다.

한편 거래형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로서는 일반적으로 경생제한적 성격을 갖는 共同行爲를 규제하여 기업간 경

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와 경제제한행위를 집중감시하였으며, 1987년말 현재 28건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91건의 사업자단체의 경제제한행위를 시정조치하였다. 또한 법 제1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지정고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不公正去來行爲 규제제도의 운용결과 1987년 말 현재 총 1,429건의 不公正去來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이중 불공정한 下都給去來行爲가 524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143건에 달하고 있다. 그밖에 국제계약상의 不公正去來行爲의 기준과 범위를 별도로 지정고시하여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 거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체결 자체를 제한하여國內의 競爭秩序를 유지하는 한편 계약당사자가 사전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예측함으로써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하였으며, 1987년말 현재 총 1,448건의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된 국제계약을 시정하였다.

V.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公正去來制度는 1975년 물가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처음 도입되어 1981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 경쟁촉진과 새로운 경제질서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장기성장기반의 확충 그리고 富의 형평분배를 위한 장치로서 점차적으로 보완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행정관행이 상당히 잔존해 있어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事後 적발 및 규제 위주로 운영되어 구조적인 경쟁여건 조성에는 미흡하였다. 더우기 최근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의 복지증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量보다는 質, 自律, 公正, 均衡 등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고도성장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대에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의 꾸준한 개선과 정부주도 경제

운용방식의 민간주도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도 과거의 규제와 간여위주에서 경쟁촉진과 잘못된 경쟁규제(rule)의 시정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쟁여건 조성으로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있어公正去來制度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제도를 우리 경제에 완전히 정착시키고 최근에 겪고 있는 민주화와 개방화라는 환경변화를 공정거래제도에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개선과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公益을 위한 정부의 개입도 공정거래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하며 국내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國內業體의 市場參入 제한 또는 공동행위는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도 국내외의 경쟁을 통해 기업체질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내시장 자체가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경제관련 법률을 전면 재검토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행정관행 등 경쟁제한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제도의 운영방향도 기존의 사후 적발 및 규제 위주에서 민간경제의 경쟁촉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쪽으로 개선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활동이 공정경쟁의 규칙하에서 원활히 전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가와 소비자는 獨占禁止와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제도를 자유방임적 행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 또는 행정규제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을 불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 경제 내에 잠재해 있는 행정질서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각종 法律 위반사건의 시정실적이 매년 크게 증가해 왔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상당수의 기업이 不公正去來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反證으로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수와 상품수 역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獨寡占의 심화를 시정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독과점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철저

10) 1988년 4월1일자로 9개 企業集團, 95개 系列會社가 신규지정되고 1개 기업집단, 4개 계열회사는 對象에 서 제외됨으로써 동 조치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 기업집단 및 系列會社數는 현재 40개 및 605개사이다.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증거로 보인다. 그리고 독과점 품목의 경쟁촉진을 위한 조치중 동 품목의 관세율이 아직도 全品目の 평균관세율보다 높은 현상은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輸入自由化 등 대외개방 확대과정에서 예상되는 외국사업자의 不公正去來行爲 및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에 필수불가결한 제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국민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은행, 조사 통계월보 1988. 5>

□ 석유단신 □



프랑스의 엘프·아카페느社는 無人해상석유기지를 4개년계획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海上기지의 電子化·自動化를 추진, 本土에서 통신위성을 통하여 원격조정하는 것으로, 시설보수이외에는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않다. 개발비용으로는 歐洲共同體(EC)와 프랑스 工業省의 보조금을 포함, 총 3억 프랑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6월 北海유전에서 발생한 海上기지폭발과 같은 대참사도 피할 수 있으며, 개발코스트의 삭감도 가능하여 상기계획은 크게 注目을 받고 있다.

현재, 海上석유기지를 운영하는데는 수백명의 인원이 필요하며, 安全面에서도 北海유전과 같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同社에 따르면, 이미 금년들어 해상석유개발에서 6백명의 희생자가 발생, 안전과 개발비용의 양면에서 無人化·自動化的 필요성이 크게 대두하였다. 엘프社가 계획중인 '쁘라띠누'로 불리는 무인해상기지는 석유·가스의 생산수익성을 향

상시키는 가장 진보된 구상이다. 이에따라 石油개발비용은 종래에 비해 30~40%의 감축이 가능하다. 특히 인건비나 輸送·보급·設營費의 합리화가 크게 이뤄진다. 이같은 비용들은 지금까지 北海유전의 경우 배럴당 가격의 5~10%, 기타유전은 최고 40%까지 차지하고 있으므로, 無人基地가 실현되면 原油가격을 상당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개발지역으로는 北海, 기니아海, 아드리아海 등이 유력하며, 현재 선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또 개발비용중 35%는 EC, 25%는 프랑스 工業省에게 보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미 일부 해상기지에서는 외부의 원격지령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衛星을 통한 指令시스템개발에도 큰 어려움은 없지만, 현상태에서는 受信장치의 信賴性과 指令을 시설물에 전달하는 기술에 난점이 있는 것 같다. ☐

<日經産業新聞>